

서울고등법원 2018. 8. 23 선고 2018나2009515(본소), 2018나2009522(반소) 판결
[유류분반환청구 · 구상금청구의 반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8. 8. 23 선고 2018나2009515(본소), 2018나2009522(반소) 판결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18 선고 2015가합572057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C

변론 종결 2018. 6. 5.

판결 선고 2018. 8. 2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5가합572057(본소),
2016가합578687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 B와 피고(반소원고)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 B와 피고(반소원고) C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1) 원고(반소피고)에게,

가)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6,183,310/4,395,300,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,412,221/289,600,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6,283,138/4,566,460,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,418,675/76,640,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7,143,288/13,920,000,000 지분에 관하여1), 별지 목록 제6,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7,143,288/480,000,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) 피고(반소원고)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44,664,015/4,395,300,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6,310,934/289,600,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54,701,513/4,566,460,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4,391,405/76,640,000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26,975,776/13,920,000,000 지분에 관하여2), 별지 목록 제6,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6,975,776/480,000,000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2) 원고(반소피고)에게, 피고 B은 53,655,337원, 피고(반소원고) C은 53,324,208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3) 원고(반소피고)에게, 피고 B, 피고(반소원고) C은, ① 각 25,835,876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, ② 2017. 10. 1.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까지 각 월 1,230,52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 C에게 1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9. 1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B과 피고(반소원고)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(반소피고)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한다.

이 유

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[피고 B과 피고(반소원고) C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함께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]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과 피고(반소원고)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시철

판사김관용

판사공도일

별지

1)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한 지분 $40/1160 \times 27,143,288/480,000,000 =$

27,143,288/13,920,000,000

2)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이 소유한 지분 $40/1160 \times 26,975,776/480,000,000 =$

$26,975,776/13,920,000,000$